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

권태율*

고동원**

【목 차】

I. 머리말

II. 내재화금융 개관

1. 서설
2. 내재화금융의 구조 및 특징
3. 내재화금융의 유형 및 법률관계

III. 주요국 규제 사례

1. 서설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평가

IV. 규제상 주요 과제

1. 선구매후결제업 도입에 대한 평가
2. 내재화금융 규제의 입법 과제

V. 맺음말

【국 문 요 약】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됨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화금융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초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거대 플랫폼 기

* 제1저자, 한국은행 감사실 감사협력반장, 법학박사.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법학박사.

업의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래서 이 글은 내재화금융에 대한 개념과 구조 및 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선구매후결제업(BNPL)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선구매후결제업의 위험 수준에 맞는 비례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제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화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 또는 업무별로 금융업을 인·허가하는 제도(small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중개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및 정보기술(IT)의 발전은 금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구글, 아마존, 메타, 트위터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금융 부문에서 비금융업과 금융업 사이의 융합을 촉진하고, 금융업 내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업과 비금융업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최근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기관의 비금융업 진출 현상으로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²⁾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나타나고 있다. 내재화금융은 비금융업을

1) 이정수,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213면.

2) Angela Strange, “Every Company Will Be a Fintech Company,” a16z Summit Presentation, 2019 <<https://a16z.com/2020/01/21/every-company-will-be-a-fintech-company-2>>. 내재화금융을 일본에서는 ‘모듈형금융’(modular finance) 또는 ‘플러그인금융’(plug-in fin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齋藤創·淺野真平, “Embedded Finance(Modular Finance)の概要と日本法, 日本での可能性,” 2021, 1-3頁. <https://innovationlaw.jp/wp-content/uploads/2021/02/Embedded_Finance_SS210210.pdf>).

제공하는 사업자(비금융기업)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중개 내지 재판 매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금융상품을 자신의 플랫폼에 내재화하여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과거 금융업계에서 일어났던 경쟁은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금융기술(FinTech)의 발전으로 금융업계를 넘어서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기업들(Big Tech)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용자의 경험은 소비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물품 및 용역의 구매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거래 속도에 따라 소비자의 이탈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기업은 각종 금융업 인허가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앱을 활용하여 하나의 앱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포탈 등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현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대 플랫폼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라 거대 플랫폼기업에 의한 독과점 현상 및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비금융업과 금융업이 융합하는 현상인 내재화금융에 대한 규제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런 목적을 갖고 II.에서는 내재화금융의 거래 구조, 유형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 개관해 보며, III.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 보면서 시사점을 알아본 후, IV.에서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3) Dresner, A. et al., “Embedded finance: Who will lead the next Payments Revolution?,” McKinsey & Company, 2022, p. 2; 신경희,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성장과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21-15, 자본시장연구원, 2021. 7, 1면; 平野真由, “エンベデッド・ファイナンス(組込金融)の序論的考察,” 富大経済論集 第67卷 第3号, 2022. 3, 5頁.

4) 유선희, “경계 희미해진 금융영역…빅테크-정통금융 충돌,” 디지털타임즈. 2022. 7. 11.

II. 내재화금융 개관

1. 서설

지금까지 결제, 송금, P2P(peer-to-peer) 금융, 자산관리 등 개별 금융업무 별로 금융기술기업(이하 ‘핀테크기업’이라 한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이용자가 이미 모여 있는 다양한 비금융업 앱에 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⁵⁾ 제조업 회사가 자신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증개하는 업무에 진출하거나 쇼핑플랫폼에 할부결제나 현금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⁶⁾ 이와 같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현상으로서 내재화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비금융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증개 내지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금융상품을 자신의 플랫폼에 내재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내재화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재화금융의 구조와 특징 및 유형과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개관해본다.

2. 내재화금융의 구조 및 특징

내재화금융의 참여자로는 비금융기업(Container or Brand), 금융기관(Provider), 조성자인 핀테크기업(Enabler)이 있다. 그 구조는 i) 고객과 접점을 가진 비금융기업은 금융기관이 개발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ii)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며, iii) 조성자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사이에서 상호 연결⁷⁾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핀테크기업이 이에 해당한다.⁸⁾ 일부

5) 허진호, “Embedded Finance.” Two Cents blog, 2020. 8. 11. <<https://hur.substack.com/p/two-cents-30-embedded-finance-tech>>.

6) 아산나눔재단,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정책 제안 발표회 자료,” 2020. 11. 5, 49면.

7) 주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이루어진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의 형식을 말한다(손재희, “임베디드 보험 사업모델의 이해,” KIRI 리포트 포커스, 2022. 8, 4면).

8) Ohnishi M., “New digital financial services offer the prospect of high customer retention-

내재화금융 구조에서는 비금융기업이 조성자인 핀테크기업의 도움없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⁹⁾

대규모 고객을 이미 보유하는 비금융기업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앱을 통해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⁰⁾ 비금융기업이 자신의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할 경우 고객과의 밀착도가 높아져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¹¹⁾ 금융기관도 비금융기업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핀테크기업은 금융서비스 부분을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¹²⁾ 내재화금융을 통해 비금융기업은 금융업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직접 받지 않고 금융업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내재화금융 참가 기업들은 내재화금융을 통해 축적된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³⁾ 반면 내재화금융은 다양한 참여자의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기존의 금융 규제와 충돌하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¹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광고, 정보 제공이나 중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¹⁵⁾

expectations for the growing trend of Embedded Finance-,” Mitsui & Co.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p. 2.

9) Deloitte, “Embedded Finance Strategic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financial services firms,” Center for Regulatory Strategy EMEA, 2022. 11, p. 7

10) Prachi Pandey, “Embedded Finance: Meaning, Examples, Advantages, and more,” SaBPaisa (2023. 1) <<https://sabpaisa.in/blog/embedded-finance/>>.

11) Markull, L., “Is Shopify a Fintech player now?,” The Hustle (2021. 1) <<https://www.larsmarkull.com/is-shopify-a-fintech-player-now/>>.

12) Ozili, P. K., “Embedded finance: assessing the benefits, use case, challenges and interest over time,” *Journal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ics*, Vol. 2 No. 2, 2022, p. 113.

13) Id., p. 114.

14) Id., p. 114.

15) Id., p. 114.

3. 내재화금융의 유형 및 법률관계

내재화금융은 내재화결제(embedded Payments), 선구매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내재화대출(embedded lending), 내재화보험(embedded insurance), 내재화투자(embedded investment or embedded wealth), 내재화은행업(embedded banking)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¹⁶⁾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가. 내재화결제

1) 개관

내재화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내에 결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¹⁷⁾ 내재화결제가 중요한 이유는 고객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⁸⁾ 즉 내재화결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 경로에 결제 체계가 자연스럽게 내장되어 소비자가 결제 과정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서 결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는 점이다.¹⁹⁾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앱서비스에서 ‘OO페이’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해외 사례로는 우버(Uber)나 리프트(Lyft) 등의 운송 공유 앱이 있으며,²⁰⁾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택시 앱(카카오T) 결제이다. 이러한 앱으로 승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용이 끝난 후 앱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²¹⁾

16) 내재화금융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어서 그 유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내외 문헌 및 업계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Ohnishi, M.(2021), Deloitte(2022) 등 참조).

17) Adyen. "What are embedded payments and how do they benefit platform businesses?," 2023. 4. <<https://www.adyen.com/knowledge-hub/embedded-payments>>.

18) 예를 들어, 쇼핑할 때마다 매번 이름이나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 전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결제 완료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NTT DATA, "「エンベデッド・ファイナンス (埋め込み型金融)の実態把握調査」 最終報告書," NTT DATA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2022, 38頁.

19) Matt Harris, Blake Adams, Adam Davis and Jeff Tijssen, "Embedded Finance: What It Takes to Prosper in the New Value Chain," Bain & Company, 2022, p. 3.

20) NTT DATA(2022), 39頁.

21) 카카오 T의 결제수단으로 카카오 T포인트,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Paypal(해외계정)를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 이용시 금융앱이나 금융사이트 등을 거치지 않고 앱에 정보등

2) 내재화결제의 법률 관계

내재화결제의 유형은 아래 설명처럼 4가지의 형태가 가능하다.²²⁾

첫 번째는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루어지고, 비금융기업이 고객을 대신하여 은행에 송금을 지시하는 형태이다(고객계좌 → 비금융기업 송금지시 → 비금융기업 계좌). 이 경우 핀테크기업은 비금융기업에 소프트웨어(앱)만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루어지고, 핀테크기업이 고객을 대신하여 은행에 송금을 지시하는 형태이다(고객 계좌 → 핀테크기업의 송금지시 → 비금융기업 계좌).

세 번째는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고, 이후 비금융기업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형태이다(고객계좌 → 핀테크기업의 정산대행 → 비금융기업 계좌).

네 번째는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핀테크기업에게 외환거래를 위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이후 비금융기업이 핀테크기업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형태이다(고객계좌 → 핀테크기업으로 계좌이체 → 비금융기업의 송금지시 → 비금융기업 계좌).

첫 번째 경우는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에 송금지시를 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중 수취인의 추심지시, 즉 ‘추심이체’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12호 나목). 추심이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따른 추심이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자금이체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전자자금이체업자는 금융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의 등록이 면제된다(법 제9조, 제28조, 시행령 제15조).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경우 핀테크기업이 비금융기업을 대신하여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핀테크기업은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및 대금정산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법 제2조 제19호, 제28조), 결제대금예치업(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또는 전자고지결제업(시행

록을 통하여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재화결제라 볼 수 있다.

22) 이하는 일본의 내재화금융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이다(齋藤創·淺野真平(2021), 6-7頁).

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한다.²³⁾

네 번째의 경우는 고객이 핀테크기업을 통하여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는 은행 등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었으나(「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기업도 소액해외송금업자(시행령 제15조의2)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자(시행령 제15조의5)²⁴⁾의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면 제한적인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핀테크기업이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발행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면 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나. 선구매후결제

1) 개관

선구매후결제는 지급수단 및 지급 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²⁵⁾ 신용공여의 성격도 있다.²⁶⁾ 해외에서는 ‘BNPL’(Buy Now, Pay Later)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라고 한다)가 영위하고 있다. 선구매후결제업은 각 나라마다 사업 유형이 다르지만, 가장 공통되는 형태는 3자(소비자-판매자-선구매후결제업자) 사이에서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 구매 당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구매 대금을 선

2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다를 뿐 기능이 동일하여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시홍,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 규제 동향과 카드업계의 대응,” 여신금융 2023년 봄호, 2023, 56면).

2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시행령 제15조의5 제2항)

25) 안태준,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신용 기반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BNPL)서비스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41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50면.

26) 선구매후결제를 내재화대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급결제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한다.

구매후결제업자에게 분할 상환하며, 판매자는 선구매후결제업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신용 기반의 후불형 지급결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⁷⁾

선구매후결제는 일반적으로 ① 이용 한도 및 지급 기간이 신용카드에 비하여 제한적이고(예를 들어, 월 일정금액 이내 등 소액이다), ② 신용평가 절차가 없으며(대신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방법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재정 상황이나 자격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③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²⁸⁾ 선구매후결제는 북유럽과 호주 등에서 먼저 도입되어 미국과 영국 등으로 확산된 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²⁹⁾ 스웨덴의 클라나(Klarna), 미국의 어firm(Affirm), 호주의 애프터페이(Afterpay) 등이 대표적이다.³⁰⁾ 판매자인 가맹점은 무이자 할부 기능과 소액 신용공여를 통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력을 높이고, 선구매후결제업자는 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구매후결제업자는 주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와 소비자가 대금의 분할상환을 연체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한다.³¹⁾ 또한 미국, 영국, 호주의 주요 선구매후결제업자들은 신용공여 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³²⁾

27)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2. 9, p. 6

28) Australian Government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 Paper, 2022. 11, p. 6;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on draft legislation,” p. 4.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regulation-of-buy-now-pay-later-consultation-on-draft-legislation>>; CFPB(2022), p. 3; 이수환,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시 고려사항 -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 이슈와 논점 제20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2면.

29) 구태영·이상원,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융센터 Brief, 1면; 이정은,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2, 1면.

30) Matthew Lynch, “What Are Affirm, Afterpay, Klarna, and PayPal Pay in 4? How ‘Buy Now, Pay Later’ Plans Work,” CNET, 2023. 7 <<https://www.cnet.com/personal-finance/loans/affirm-klarna-afterpay-and-more-buy-now-pay-later-plans-explained/>>.

31) FCA, “The Woolard Review - 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3.

미국의 어필(Affirm)의 영업 형태를 보면, 소비자가 Affirm의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점으로부터 1,000달러의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 방법으로 3회의 후불을 선택한 경우, Affirm은 자체적인 위험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선구매후결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부과하는 이자를 바로 결정하며, 심사를 통과하고 제시된 이자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Affirm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³³⁾ 소비자는 그 후 3회에 걸쳐 상품의 구매 대금과 신청 시 결정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³⁴⁾ 이때 실제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는 Affirm과 제휴한 은행업 인가를 받은 Cross River Bank이며, Cross River Bank가 대출 신청을 평가하고 승인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이 대출채권을 Affirm에 매각하게 된다.³⁵⁾

2)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법률관계

선구매후결제 업무가 활성화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선구매후결제 업무가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가 선구매후불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허용되고 있으며,³⁶⁾ 2023년 8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24년 9월 시행)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인정된다(법 제35조의2, 제49조 제5항 제6호의

32)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2개월 내에 12회 이하의 할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FCA(2021), p. 43); 호주의 경우 단기 소액 거래로 이자나 수수료가 없는 후불결제에 대하여 국가신용법(Part 3.2 of the National Credit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11, p. 15); 일본의 경우 2개월 이내 할부에 대해서는 「할부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桜井健夫, "キャッシュレス支払いの構造・法制度と消費者問題," 現代法学 第43卷, 2022, 28頁).

33) 城田真琴, 『エンベデッド・ファイナンスの衝撃』, 東洋經濟新報社, 2021, 80頁.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가맹점은 그에 따른 판매대금을 선구매후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는데, 이때 선구매후결제업자는 원래의 판매대금에서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ASIC(2018), p. 6.)

34) 城田真琴(2021), 80頁.

35) Nikita Sheth, "How does Affirm make money?," Finty, 2023. 8 <<https://finty.com/us/business-models/affirm/>>.

3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보도자료, 2021. 2. 18, 2면.

2, 제9호의2). 혁신금융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이라 한시적인 것인데,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법적 근거를 두어서 법제화가 된 셈이다.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정보기술기업이나 제휴 은행이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대출성 상품 또는 신용카드 업무와 유사하다는 견해,³⁷⁾ 전자지급수단이라는 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구매후결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후불로 정산하는 경우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외상 판매), 두 번째는 핀테크기업이 고객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즉, 핀테크기업이 자신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 번째는 핀테크기업이 고객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일반 대금지급 방식의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면 되므로 별도의 금융법에 따른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할부로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핀테크기업이 자신의 신용으로 구매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위하고 있어서 등록이 면제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자가 겸영업부로서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의 경우 핀테크기업이 대출을 중개·알선하므로 대출중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대출중개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

37) ASIC(2018), p. 4; HM Treasury(2023), p. 14.

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선불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주), (주)비바리퍼블리카, (주)카카오페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3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³⁸⁾ 네이버페이의 경우, 충전금이 부족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후결제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 수취는 할 수 없으며, 할부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³⁹⁾ 카카오페이(2021년 5월)⁴⁰⁾와 토스(2021년 11월)⁴¹⁾도 각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다.⁴²⁾ 반면, 유통업체인 쿠팡은 직매입한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매매 계약 형태로 후불결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불업자가 영위하는 후불결제와는 다르다. 판매자가 쿠팡이기 때문에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일종의 ‘온라인 외상결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구매후결제업과는 달리 쿠팡은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⁴³⁾ 상품에 대해서 외상 결제 업무를 제공하다가 2022년 8월 자회사인 (주)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 중 최초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할부금융업자로 등록하였다.⁴⁴⁾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자로 등록한 (주)쿠팡파이낸셜은 선구매후결제업자와 달리 직접 이용자에게 대출상품(할부금융)을 판매할 수 있다. 반면에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결제나 리볼빙 및 현금서비스의 제공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⁴⁵⁾ 신용카드 연체 정보의 경

38) 앞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2. 28); 금융위원회,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참고자료, 2023. 8. 24.

39)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0. 12. 10, 9면.

40)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버스·지하철 등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보도자료, 2021.5.26.).

4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및 주요성과 -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지정 / 서비스 관련 고용증가·투자유치 성과,” 보도자료, 2022. 11. 9.

42) 앞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3. 8. 24).

4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44)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c), “카카오가 쏘아올린 플랫폼 규제 이슈,” 하나 Knowledge+ 제 39호, 2022. 12, 10면.

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금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사이에 해당 정보가 공유된다. 그러나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금융기관과 연체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⁴⁶⁾ 또한 신용카드회사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규제를 강하게 받으나(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선구매후결제 업무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⁴⁷⁾ 국내의 선구매후결제는 분할 납부 기능이 없고, 사용 금액 한도가 소액(30만원)이어서 해외와 같이 활성화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⁴⁸⁾

다. 내재화대출

내재화대출은 비금융기업이 대출 업무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 업무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⁴⁹⁾ 내재화대출 업무의 주요 고객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이베이(ebay)는 영국에서 2021년 5월부터 ‘Capital for eBay Business Sellers (CEBS)’라는 중소기업대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⁵⁰⁾ 핀테크기업인 YouLend와 제휴를 통해 대출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⁵¹⁾

우리나라의 경우 (주)네이버파이낸셜은 2020년 말 (주)미래에셋캐피탈 및 우리은행과 협업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 중개 업무를

45)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도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자가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46) 박성호, “핀테크업계, 후불결제 연체 정보 공유 제한 풀어달라,” 세계일보, 2023. 1. 24;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c), 10면.

47)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c), 10면.

4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MZ세대를 공략한 후불결제(BNPL) 서비스의 부상,” 하나 Knowledge+, 2021. 6, 2면.

49) KPMG, “Embedded Finance – Partnering platform for success,” KPMG in Singapore, 2022, p. 4

50) Youlend, “Announcing Capital for eBay Business Sellers provided by YouLend,” 2021. 5. <<https://youlend.com/blog/announcing-capital-for-ebay-business-sellers-provided-by-youlend>>.

51) 城田真琴(2021), 89頁.

시작하였다.⁵²⁾ (주)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기관을 통한 중개 방식으로 사업자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주)네이버파이낸셜의 대출중개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통해(법 제2조 제2항, 제3항)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중개해 주는 방식이다. 2022년 6월 (주)네이버파이낸셜은 기존 온라인사업자 전용에서 오프라인 중소기업자(SME) 전용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상품’의 중개 업무를 개시하며 대출 대상을 확대하였다.⁵³⁾ 해당 은행상품의 한도 조회를 쉽고 간편하게 하고(비대면으로 1분 이내), 추가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해당 은행 앱에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며,⁵⁴⁾ 사업자의 실제 소득과 신용평가회사 추정 소득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⁵⁵⁾ 한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주)쿠팡은 자회사를 통해 입점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⁵⁶⁾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기업이 내재화대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가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나 대부업자 등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며,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법 제2조 제3호)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3조), 핀테크기업의 경우 금융업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업권별로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라. 내재화보험

내재화보험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비보험회사가 해당 재화나 용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을 재화나 용역 구매 과정에

52) 유선희, 앞의 기사(2022. 7. 11).

53) 하나금융연구소(2022b), 6면.

54) 반난새, “'비대면 대출 2년새 6배로'...네이버 손잡고 '지방 족쇄' 벗는 전북은행,” 한국경제신문, 2022. 9. 14.

55) 정기영, “이커머스 기업, 입점업체 대상 대출상품 ‘붓물,’” 중기이코노미, 2022. 9. 16.

56) 하나금융연구소(2022b), 8면.

내재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⁵⁷⁾ 즉 소비자의 재화나 용역 구매 등 소비자의 행동 경로상에 보험 가입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내재화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 상담을 진행해야 했던 기존의 보험 판매 구조와 달리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⁵⁸⁾

내재화보험을 제공하는 사업 유형은 i) 비금융기업이 직접 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유형(사업자 유형), ii) 핀테크기업 중심으로 중개를 하거나 위험을 심사하여 제공하는 유형(인슈어테크 유형), iii) 핀테크기업이 보험업 허가를 받아 직접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유형(보험회사 유형)로 나눌 수 있다.⁵⁹⁾

보험상품이 제공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형식이 있는데, ①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필요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선택방식, Opt-In 방식), ②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보험상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방식(배제방식, Opt-out 방식), ③ 재화나 용역에 보험상품이 완전 결합되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제공된다.⁶⁰⁾

2010년대 초 중국의 중안보험(众安保險)이 알리바바와 협업하여 택배 반송보험⁶¹⁾을 제공한 것을 내재화보험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⁶²⁾ 다른 예로는 일본항공(ANA)이 항공권 취소 보험(Solar Mole)을 운영하고 있는데,⁶³⁾ 이 보험은 악천후로 인한 결항 우려 등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환불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⁶⁴⁾ 아마존(Amazon)은 자사 상품물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⁶⁵⁾ 테슬라도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57) 손재희(2022), 1면.

58) 齋藤創·淺野真平(2021), 14頁.

59) 손재희(2022), 4면.

60) 이광현, “임베디드 보험의 이해와 해외사례,” 손보논단, 2022. 11, 22면.

61) 위의 글, 21면.

62) 위의 글, 20면.

63) 城田真琴(2021), 91頁.

64) 城田真琴(2021), 91頁.

65) 이광현(2022), 23면.

자체 운전자보험을 제공하고 있다.⁶⁶⁾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연장 보험,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반송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형태로 내재화 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해외에 비해서 아직 크지 않다.⁶⁷⁾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연장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서 고장 수리비를 보상하고,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보험은 대형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입이 가능하며 고장 발생 시 고장수리 비용을 보상받는다.⁶⁸⁾ 반송(반품) 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시 함께 보험 상품을 구매하면 반품 비용을 보상해 주며, 운전자보험의 경우 내비게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로를 분석해 예상보험료를 알려주고 가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⁶⁹⁾

내재화보험의 경우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중개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하다(법 제12조). 그러나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예금상품, 보험상품 및 P2P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대리·중개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다.⁷⁰⁾ 또한 내재화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위해 간편가입 서비스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각종 리워드·포인트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보험업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간편 보험가입 서비스 제공은 설명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2)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쿠폰 및 상품권을 통한 보험 가입은

66) Raspa, S., "6 Examples Of Embedded Finance Changing The Future," Finextra, 2020. 11. 12. <<https://www.finextra.com/blogposting/19524/6-examples-of-embedded-finance-changing-the-future>>.

67) 손재희(2022), 2면.

68) 손재희(2022), 2-3면.

69) 손재희(2022), 3면.

70)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보도자료, 2022. 8. 23; 금융위원회, "6월부터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도참고자료, 2023. 3. 23.

보험 ‘모집’ 행위(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⁷¹⁾

마. 내재화은행업

내재화은행업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 대신 비금융기업이 앱을 통해 예금이나 직불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⁷²⁾ 내재화은행업은 은행업 인허가를 받은 은행과 협력하여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⁷³⁾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본인 확인(Know Your Customer) 절차나 결제를 위한 카드 인증 등을 자동화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평가나 예금 금리 계산 등을 처리할 수 있다.⁷⁴⁾ 내재화은행업은 소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제공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⁷⁵⁾

현재는 은행 계좌 제공이나 현금카드 발급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사의 직원이나 거래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⁷⁶⁾ 내재화은행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던 예금 계좌 개설 업무를 은행을 대신하여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⁷⁷⁾ 예를 들어, 미국의 차량 공유 운송업체인 리프트(Lyft)의 직불카드가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회사로부터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 리프트는 마스터카드와 공동으로 은행계좌 및 직불카드인 “Lyft Direct Mastercard Debit”을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⁷⁸⁾ 이 직불카드는 리프트 운전자가 수입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은행계

71)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김준영·이일석, “보험과 핀테크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BFL 제108호, 2021.7, 48면.

72) 齋藤創·淺野真平(2021), 16頁.

73) Banking Circle, “What is embedded banking?,” 2023. 3. 10. <<https://www.bankingcircle.com/what-is-embedded-banking-0313621>>.

74) Id.

75) Id.

76) 城田真琴(2021), 109頁.

77) 城田真琴(2021), 109頁.

78) Raspa, S.(2020.11.12.).

좌와 직불카드를 발급한 업자는 은행업 인허가를 받은 Stride Bank이며, 앱은 금융앱 전문 개발업체인 Payfare가 개발하였다.⁷⁹⁾ 또 다른 예로서 월마트가 그린닷뱅크와 제휴하여 만든 ‘머니카드’(money card)는 이자가 부여되는 선불형 체크카드였으나, 2020년 5월부터는 고수익 저축 기능과 캐시백 기능을 추가하고 온라인 계좌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경하였다.⁸⁰⁾ 이 카드는 사용자가 지정한 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도 쇼핑이나 인터넷 결제 등 다양한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에 대하여 2%의 이자를 부여하고 있다.⁸¹⁾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기업이 예금 및 결제계좌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 인가를 받거나(은행법 제8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예금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해서는 등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제6조), 실무상 이러한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²⁾ 이러한 규제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예금상품 등의 내재화은행 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예외를 인정받지 않고서는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바. 내재화투자

내재화투자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비금융기업이 소액으로 투자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투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로서 하여금 소액으로 편리하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⁸³⁾ 내재화투자는 이용자가 별도의 투자 선택과 구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의 진

79) 城田真琴(2021), 109頁.

80) <<https://www.walmartmoneycard.com/>>.

81) Id.

82) 같은 견해는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 동향 제109호, 2020. 11, 5면.

83) Team Happy, “What is Embedded Finance: Examples, Benefits and Opportunities,” 2023. 4. <<https://happay.com/blog/embedded-finance/>>.

입 장벽을 낮추고,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⁸⁴⁾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에이콘즈(Acorns)라는 개인 투자·저축 앱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연동해 놓으면 자동으로 잔돈을 주식에 투자해 준다.⁸⁵⁾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⁸⁶⁾ Acorns는 이용자의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하고, 이 저축 계좌에서 자동으로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를 하게 된다.⁸⁷⁾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의 ‘동전 모으기’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전 모으기’는 카카오페이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하면 1,000원 미만으로 남은 동전을 알아서 계산해 미리 지정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⁸⁸⁾ 카카오페이 앱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내의 펀드나 보험상품의 판매가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대리·중개업 등록이 없는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할 경우 문제가 있지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⁸⁹⁾ 이는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상품 선별과 설명 및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⁹⁰⁾ 내재화투자도 기본적으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따르고 이용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해야 하며,⁹¹⁾ 자동으

84) Id.

85) Raspa S.(2020. 11. 12.).

86) 齋藤創·淺野真平(2021), 13頁.

87) Acorns, “How does Acorns work?,” 2022. 3. 25. <<https://www.acorns.com/learn/acorns/how-does-acorns-work/>>.

88) 김진솔, “카카오페이 "잔돈 모아 펀드 투자하세요~," 매일경제신문 2020. 4. 28.

89) 장도민, “카카오페이, 펀드에 잔돈 투자하는 '동전 모으기' 서비스 중단 안한다,” 뉴스1, 2021. 9. 24.

90) 위의 기사.

로 투자를 진행하므로 이용자가 선택한 포트폴리오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⁹²⁾ 따라서 이용자는 내재형투자를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목표와 투자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기업이 내재화투자로서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 인가를 받거나(제12조)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그러나 직접 인가를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통해(법 제12조) 내재화투자 업무를 영위할 수는 있을 것이다.

Ⅲ. 주요국 규제 사례

1. 서설

내재화금융의 본질은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금융업에 대한 기존 규제와 상충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서 각 나라별로 규제의 모습이 다르다. 내재화금융에 있어서 핀테크기업이 금융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내재화금융의 구조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인허가를 받는 방식을 취하겠지만,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내재화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의 업무 범위에 있어서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는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금융업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내재화금융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플랫폼기업이나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선구매후결제업은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핀테크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한

91) Acorns, "Is Acorns Safe?," 2023. 6. <<https://www.acorns.com/learn/acorns/is-acorns-safe/>>.

92) Acorns, "New Custom Portfolios: Choose Your Acorns Investments," 2023. 6. <<https://www.acorns.com/learn/acorns/custom-portfolios/>>.

꺼번에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중개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중개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지 여부와 거대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하에서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가. 서설

미국에서 내재화금융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수수료 상한선을 규정한 2010년 ‘더빈 수정조항’(Durbin Amendment)⁹³⁾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카드 발급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고객들에 대한 이자 수입을 높이거나 다른 수수료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⁹⁴⁾ 더빈 수정조항이 시행되면서 디지털뱅킹 및 모바일 결제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 전반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통적인 은행과 경쟁하는 인터넷은행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⁹⁵⁾ 미국의 경우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핀테크기업과 은행 사이의 협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⁹⁶⁾

나. 선구매후결제업

미국의 선구매후결제업 규제에 대해 일부 주(州)는 여신 공여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 바 있다. 2020년 Quadpay의 선구매후결제업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 사업감독국(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은 선구매후결제업자에 대하여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였다.⁹⁷⁾

93) 2010년에 시행된 법률로 ‘더빈 수정조항’(Durbin Amendment 제1075조)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수수료를 상한선으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NTT DATA(2022), 102頁).

94) NTT DATA(2022), 102頁.

95) NTT DATA(2022), 102頁.

96) NTT DATA(2022), 104-105頁.

미국의 여신업자는 연방 대출진실법(Truth-in-Lending Act)과 Regulation Z에 따른 정보공시 의무,⁹⁸⁾ 소비자보호 규정⁹⁹⁾ 및 선택권 보장¹⁰⁰⁾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미국의 선구매후결제업자는 여신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를 규정하는 대출진실법(15 U.S.C. §§1601~1667f) 및 Regulation Z(12 C.F.R. §1026)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분할 상환 횟수 제한, 수수료 및 무이자 정책 등의 규제 적용 요건을 회피하여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¹⁰¹⁾ 즉, 선구매후결제업자는 여신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에 대한 분할상환 횟수를 4회 이내로 하고, 대부분의 대출 금액은 \$50~\$1,000 정도의 금액이며, 소비자에게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¹⁰²⁾ 물품 구매 시 지급하는 1회 분할 대금은 구매 시점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회 분할 대금은 2주 간격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¹⁰³⁾ 이러한 선구매후결제업의 경우 대출진실법과 Regulation Z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시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쟁 해결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와 선구매후결제업자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소비자는 분할대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

97) 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 "Point-of-Sale Lender QuadPay Agrees to Cease Illegal Loans, Pay Refunds in Settlement with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 2020, p. 1.

98) CFPB(2022), p. 72. 여신업자는 대출진실법과 Regulation Z에 따라 신용공여상품의 조건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신용공여 금액, 분할상환 횟수, 수수료, 연이율, 연체이자 등이 포함된다(12 C.F.R. 1026.18.).

99) Regulation Z는 소비자와 여신업자 사이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소비자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12 C.F.R. § 1026.12 (c)), 신용카드업자가 동일한 연체 카드대금에 대하여 중복하여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2 C.F.R. § 1026.52(Limitations on fees) (b) (2) (ii)).

100) 전자자금이체법 및 Regulation E는 여신업자에게 소비자로부터 하역금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여신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신용공여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여신채무를 갚을지 여부 및 어떻게 갚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 C.F.R. § 1005.10 (Preauthorized transfers.) (e) Compulsory use).

101) CFPB(2022), p. 72.

102) CFPB(2022), p. 6.

103) "2022 CFPB Releases Long-Awaited Report on Buy Now Pay Later Industry," <<https://www.mayerbrown.com/en/perspectives-events/publications/2022/09/cfpb-releases-long-awaited-report-on-buy-now-pay-later-industry>>.

제가 있다.¹⁰⁴⁾ 또한 선구매후결제업자가 소비자의 상환 방법 결정이나 변경 선택권을 제한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¹⁰⁵⁾ 그리고 선구매후결제업의 경우 연체 이력을 신용보고기관에 보고하거나 다른 선구매후결제업자와 공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른 선구매후결제업자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복수의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동시에 이용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¹⁰⁶⁾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제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선구매후결제 업무에 대하여도 신용카드업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¹⁰⁷⁾

다. 내재화결제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 간편결제업무는 ‘자금서비스업’(money service business)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반으로 금전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¹⁰⁸⁾ 대출진실법,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등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간편결제에 대해서도 위의 법률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¹⁰⁹⁾ 간편결제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국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가 이체 정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이체된 경우 반환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100~1,000)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¹¹⁰⁾ 간편결제업자는 소비자에게 전자자금이체 관련 조건과 중요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104) CFPB(2022), p. 73.

105) CFPB(2022), p. 74.

106) CFPB(2022), pp. 65-66.

107) Chuck Bell, “Buy Now, Pay Later: Consumer Protections Needed for the Popular New Way to Pay,” Consumer Reports, 2022. 11. 21 <<https://advocacy.consumerreports.org/research/buy-now-pay-later-consumer-protections-needed-for-the-popular-new-way-to-pay/>>.

108) 전자자금이체법은 전자지급수단 발행 내지 자금송금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31 C.F.R. Part 1022(Rules for Money Services Businesses)).

109) CFPB(2022), p. 75.

110) FRB, *Consumer Compliance Handbook*, 2010, p. 9.

주어야 하고,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¹¹¹⁾ 그러나 비금융기업에 의한 간편결제업무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사전 안내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거래 안전,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¹²⁾ 또한 거대정보기술기업(BigTech)이 지급결제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독점의 부작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¹¹³⁾

3. 일본

가. 서설

일본 정부는 2020년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이하 “금융서비스법”이라고 한다)의 제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이하 “자금결제법”이라고 한다)과 소액 선구매후결제업 도입을 위한 「할부판매법」(割賦販売法)의 개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업권별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金融サービス仲介業)이 신설됨에 따라 내재화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국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핀테크기업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대기업과 자회사가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로 내재화금융이 제공되고 있다.¹¹⁴⁾

나. 금융서비스중개업 신설

2020년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서비스법으로 개정하여 한 번의 등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분야의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를 도입하였다.¹¹⁵⁾ 도입 배경을 살

111) 31 C.F.R. Part 1022.320.

112) CFPB(2022), p. 75.

113) CFPB(2022), p. 75.

114) NTT DATA(2022), 28頁.

115) “少額決済 参入しやすく - 経産省, 後払い方式の要件緩和 キャッシュレス拡大促す”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2030130R11C19A1EE8000/>>.

펴보면,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활발해지면서 은행·증권·보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각 업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했고,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소속 금융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¹¹⁶⁾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의 도입으로 하나의 인허가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의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⁷⁾ 즉, 금융서비스중개업이란 “예금 등 중개 업무, 보험 중개 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 업무, 대출 중개 업무의 어느 하나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서비스법 제11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 중개 업무를 하는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금융서비스법 제18조). 이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금융서비스중개업자로 등록하면 은행, 증권, 보험 중개가 가능해져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⁸⁾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금융서비스법 제12조).¹¹⁹⁾

다. 소액 선구매후결제업 도입

일본의 경우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신용구매중개업’으로 분류하여 신용카드 규제 법률인 「할부판매법」(割賦販売法)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개정된 「할부판매법」을 통하여 소액(한도액 10만엔 이하)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¹²⁰⁾ 등록 요건으로서는 순자산 요건과 적정 한도액 심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

116) 金融庁,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説明資料, 2020, 3頁.

117) 金融庁 説明資料(2020), 3頁.

118) 金融庁 説明資料(2020), 3頁.

119)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금 공탁 의무(법 제22조), 성실 의무(법 제24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보수 등 정보 제공 의무(법 제25조),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법 제26조), 이용자 정보의 적정한 취급 의무(법 제26조), 이용자 재산의 수취 금지(법 제27조), 장부 서류의 작성 의무(법 제33조) 등이 적용된다.

120) 割賦販売法 第35條2의3, 割賦販売法 第35條2의11, 施行令 第24條.

다.¹²¹⁾ 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판매법」에 따른 ‘신용 구입알선업자’(括信用購入あつせん業者)로 등록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과도한 채무 방지를 위해 지급 가능 예상 금액을 조사·산정할 의무가 신용 구입알선업자에게 부과된다.¹²²⁾ 또한 축적된 정보 등에 따른 고도의 한도액 심사 기법을 경제산업대신이 심사 방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¹²³⁾ 인정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심사 기법을 가지고 현재의 지급 가능 예상액 조사에 같음할 수 있다.¹²⁴⁾ 인정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¹²⁵⁾ 법제도 측면에서 최근에는 관련 규제 완화가 진행되어 기존에 비해 핀테크기업이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규제 개선을 위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¹²⁶⁾

라. 내재화결제업 규제

일본은 2020년 6월 5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소액송금만 취급하는 ‘제3종 자금이동업’을 신설함으로써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였다. 기존의 자금이동업을 ‘제2종 자금이동업’으로 규정하고, 고액송금을 취급할 수 있는 ‘제1종 자금이동업’과 소액송금만 취급하는 ‘제3종 자금이동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수납대행 업무에 환거래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으며(법 제2조의2), 이에 따라 더치페이 어플을 이용한 수납대행 서비스도 자금이동업에 포함되었다.¹²⁷⁾ 또한 선불 식지급수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건전

121) 割賦販売法 第35條2의 11.

122) 割賦販売法 第30條의5, 第31條~第35條의 2.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2개월 미만의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寺田真子, “BNPLとは? 話題の「後払い決済」の不正リスクと対策, 法規制の動向を解説,” NRI SECURE, 2023. 2. <<https://www.nri-secure.co.jp/blog/what-is-bnpl>>).

123) 割賦販売法 第30條5의4 第1項 第1号, 施行令 第62條 第1項.

124) 割賦販売法 第30條5의4 第1項 第1号, 施行令 第62條 第1項.

125) 割賦販売法 第30條6, 第30條5의4 第5項.

126) NTT DATA(2022), 32頁.

127) 坂勇一郎, “資金移動業 (1),” 誌上法学講座, 2021. 3, 38頁.

하고 적절한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 제3항).

일본의 경우 간편결제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¹²⁸⁾ 그러나 간편결제 업무에 여러 법률들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규제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¹²⁹⁾ 즉,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자금결제법이 적용되지만 각 업권별로 「할부판매법」, 「은행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각각 적용되어서 규제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어, 이를 동일 기능과 동일 위험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¹³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금결제법상 자금 이동업자에 대해서 등록제, 공탁 의무, 정보의 안전 관리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¹³¹⁾

4. 영국

가. 서설

영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¹³²⁾ 영국은 제한적 인가(Restricted Authorization),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 규제 특례 적용 및 수정(Waivers or Modifications to Rules),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비공식 지도(Informal Steers) 등 5가지 유형의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¹³³⁾ 영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128) 商務-서비스그룹캐시리스推進室(2023), “キャッシュレスの将来像に関する検討会とりまとめ,” 經濟産業省, 2023, 12頁.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cashless_future/pdf/20230320_1.pdf>.

129) NTT(2022), 35-37頁.

130) 商務-서비스그룹-商取引監督課, “決済横断法制論について,” 經濟産業省, 2019, 9-11頁.

131) 자금이동업자의 자율규제 내용은 「資金移動業自主規制規則」(2022년 3월 일부 개정) 참고. <<https://www.s-kessai.jp>>.

132) FCA(2022), *Regulatory Sandbox*, 2022. 3. <<https://www.fca.org.uk/firms/innovation/regulatory-sandbox>>.

133)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Guide to promoting financial & regulatory inno

FCA)은 인가 미취득 사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테스트 등 일정한 제약 내에서만 사업이 허용되는 제한적 인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맞춤형 인가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¹³⁴⁾ 통상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은 해제되며 재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한적 인가의 경우 통상의 인가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¹³⁵⁾ 영국의 경우 별도의 법령에 근거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감독기관이 개별 회사에 대하여 인허가와 규제 수정, 유예 및 면제 등 광범위한 권한¹³⁶⁾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⁷⁾ 이처럼 규제 면에서 감독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있어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 사업자 및 신사업 영역에 대하여 유연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선구매후결제업

영국의 경우 신용공여계약이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이나 FCA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에 따른 「규제업무 시행령 2001」(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제60F(2)조는 12개월 미만 및 12회 이하의 할부로 상환할 수 있는 무이자계약에 대해서 규제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¹³⁸⁾ 즉, 선구매후결제 업무가 “① 선구매후결제업자와 판매자인 가맹점 사이 고정금액의 신용공여를 위한 약정일 것, ② 분할 상환 횟수가 12회 이하일 것, ③ 분할 상환 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것, ④ 이자 또는 수수료 없는 신용공여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비자신용법이나 FCA의 규제를 받

vation,” 2018. 3, p. 21.

187) Id., p. 21

135) Id., p. 21

136) FSMA Section 138A(4)는 규정의 면제나 수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FCA에 부여하고 있다.

137) Bank of England, “Waivers and modifications of rules,” <<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authorisations/waivers-and-modifications-of-rules>>.

138)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on draft legislation,” 2023, p. 7.

지 않는다.¹³⁹⁾ 그러나 FCA는 선구매후결제 업무도 소비자신용 관련 기존의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FCA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¹⁴⁰⁾ 영국 정부는 선구매후결제 업무를 규제할 의도를 밝히고 있으나, 다른 신용공여 상품과 비교할 때 균형 있고 비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⁴¹⁾ 즉, 선구매후결제 업무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자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구매 시 대금 지급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신용공여 상품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위험 수준에 맞는 균형 있고 비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¹⁴²⁾ 현재는 선구매후결제 업무가 FCA의 규제나 소비자신용법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어서 가맹점이 소비자로서 하여금 선구매후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더라도 여신중개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¹⁴³⁾ 여신중개업 규제와 같은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기존의 엄격한 소비자신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¹⁴⁴⁾

5. 평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및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

139) Id., p. 4;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5.

140) 이정은(2021), 4면.

141) HM Treasury(2021), pp. 5-7.

142) HM Treasury(2021), p. 7 (균형있고 비례적인 규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선구매후결제 업무는 위험의 정도에 비례적인 개입 정도만을 필요로 하고, 그 개입이 지급결제수단 결정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키거나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제공을 금지시킬 정도여서는 안 되며, ② 소비자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선구매후결제업자를 상대로 한 분쟁해결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선구매후결제 업무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신용 시장이나 지급결제수단 시장 전반에 걸친 경쟁과 혁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④ 가맹점에 대한 부담은 비례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대규모 가맹점에 비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43) HM Treasury(2021), p. 16.

144) HM Treasury(2021), p. 16.

음을 알 수 있다. 금융업에 대한 진입 규제에 대하여 제한적 인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선구매후결제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업무의 순기능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 번의 등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중개가 가능한 금융서비스중개업을 도입한 것은 내재화금융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편, 내재화금융은 편의성, 포용금융, 거래비용 절감 등의 금융 혁신의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 각 나라의 사례를 보면 위험이 높거나 큰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규제를 하며, 현행 수준에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기존 규제 장벽을 낮추어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규제상 주요 과제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재화금융에 대한 주요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내재화금융 중 선구매후결제업이 법제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 내재화금융 규제에 있어서 공통되는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¹⁴⁵⁾

1. 선구매후결제업 도입에 대한 평가

가.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규정 필요

2024년 9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자 하는 선불업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의2). 즉,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145) 내재화결제, 내재화투자, 내재화보험, 내재화은행업 등에 대한 각 부문별로 검토도 필요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입법화된 선구매후결제업 도입에 대한 평가와 내재화금융에 공통되는 입법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런데, 이렇게 선불업자만이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타당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셈이어서 다양한 핀테크기업이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불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핀테크기업이 선구매후결제업에 진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자의 등록 요건 중의 하나로서 최소 자본금 요건이 20억 원인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핀테크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선구매후결제업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¹⁴⁶⁾ 반면에 일본의 경우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액 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의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을 두지 않고 순자산 요건만 두어,¹⁴⁷⁾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핀테크기업도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도 「할부판매법」에서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나. 규제의 필요성 및 적용 법률 논의

선구매후결제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과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선구매후결제업의 경우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점과 앱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 이용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분쟁 해결의 어려움, 개인정보 수집 문제,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¹⁴⁸⁾ 특히 선구매후결제 업무는 신용정

146) 같은 취지로 김시홍(2023), 78면.

147) 割賦販売法 第33條2 第4号에서 자산의 합계액으로부터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frauddetection.cacco.co.jp/media/news/1278/#1-2>>.

보 공유가 되지 않아 저신용자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Thin Filer)도 신용공여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이용자에게 채무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도 있다.¹⁴⁹⁾ 또한,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대금 상환 조건이나 연체료에 대해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 등의 우려도 있다.¹⁵⁰⁾

이런 점에서 보면 선구매후결제 업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에 선구매후결제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선구매후결제 업무는 이용자에게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과 같은 여신 업무에 해당하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선구매후결제업은 신용카드업과 차별화되고, 신용공여 기능이 주 목적이 아니며, 소액의 기명식에 해당하는 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¹⁵¹⁾ 한편, 적용 법령이 이원화되면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체계를 일원화하여 규율하고,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 선구매후결제업’ 제도를 도입(small license 형태)하자는 견해도 있다.¹⁵²⁾

어떤 법률에 선구매후결제업을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규제 환경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신용 관련 규제를 선구매후결제업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¹⁵³⁾ 일본의 경우도 신용카드를 규율하는 「할부판매법」에 선구매후결제업을 규정하고 있다.¹⁵⁴⁾

148)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9. <https://s3.amazonaws.com/files.consumerfinance.gov/f/documents/cfpb_buy-now-pay-later-market-trends-consumer-impacts-report_2022-09.pdf>.

149) 안태준(2023), 85면.

150) 안태준(2023), 85면.

151) 김시홍(2023), 80-81면.

152)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2022. 8, 107면.

153) 안태준(2023), 83면.

그러나 우리의 경우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소액 선구매후결제 업무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거래 이력 부족자에 대한 금융포용성을 갖는다는 점과 이용자의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혁신금융의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업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선구매후결제업은 신용카드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① 신용평가 절차가 없으며(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평가 방법 또는 알고리즘을 통한 소비자 재정상황·자격 평가 방법 등이 활용된다), ② 이용한도 및 지급기간이 신용카드에 비하여 제한적이고(예를 들어, 월 30만원 이내 등 소액), ③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제공된다는 점에서¹⁵⁵⁾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위험 수준에 맞는 균형 있고 비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¹⁵⁶⁾ 선구매후결제 업무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선구매후결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 설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선구매후결제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선구매후결제업에 대한 행위 규제를 규정한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을 소액 선구매후결제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5조의2 제2항).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의 업무 범위, 이용 한도, 총 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법 제35조의2 제3항), 업무 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154) 割賦販売法 第35條2의11.

155) 이수환(2022), 2면.

156) 같은 취지로 HM Treasury(2021), p. 7.

다. 연체정보의 공유 문제

한편, 다른 신용공여 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연체 이력을 다른 선구매후결제업자와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나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유 필요가 있다는 견해¹⁵⁷⁾와 연체 이력 정보 공유에 부정적인 견해¹⁵⁸⁾가 있다. 검토해보면, 선구매후결제 업무에 대하여 신용정보 공유 등 신용공여 상품과 같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저신용자의 접근성 확보라는 장점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평가 방법 활성화 등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험도에 비례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금액 및 할부 횟수 제한 등 선구매후결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전제 아래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평가 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¹⁵⁹⁾

2. 내재화금융 규제의 입법 과제

가. 목적별·업무별 금융업 인허가(small license) 제도 도입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기술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업무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내재화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⁶⁰⁾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내재화금융이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서 업종별로 금융업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진입 규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⁶¹⁾ 이러한 방식의 진입 규제 제도 아래에서는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내재화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업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내재화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핀테크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157) 이수환(2022), 4면.

158) 안태준(2023), 85면.

159) 같은 견해로 안태준(2023), 87면.

160) Radhika Lipton, "The regulators' uphill battle heading into a new era," 2022.5. <<https://mbu.com/insights/articles/embedded-finance-in-the-face-of-regulations>>.

161) 아산나눔재단(2020), 51면.

그러한 방안으로서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서 목적별·업무별로 금융업을 인허가해주는 제도(small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업무 범위와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과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한 인허가 내지 등록 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례처럼 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낮추어 핀테크기업에게 은행업을 허용하는 대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예금 업무나 담보대출(mortgage) 업무로 제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¹⁶²⁾ 즉, 핀테크기업이 소규모 특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금융업 참가자의 확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 인허가 단위의 세분화 정도와 진입 요건의 수준 등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내재화금융의 활성화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규제 설정은 필요할 것이다.

나. 금융상품중개업의 법제화

내재화금융은 비금융기업의 금융상품을 중개 내지 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플랫폼에 금융 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이므로,¹⁶³⁾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을 요한다(법 제12조). 그러나 현재 대출상품을 제외하고는 예금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¹⁶⁴⁾ 앞서 살펴본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온라인플랫폼 금융상품중개업 시범 운영을 허용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⁶⁵⁾

162) 김도엽, “금융 인허가 단위 쪼개는 ‘스몰 라이선스’ 윤곽 12월 나온다,” News1, 2020. 7. 15.

163) 신경희(2021), 1면.

164) 앞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8. 23), 7면.

그러나 온라인 금융상품중개업에 대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임시 운영은 비록 소비자 보호 장치를 부가 조건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위반 시 제재나 피해 구제 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범 운영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출상품 이외에도 예금상품이나 보험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금융상품중개업이 법제화되면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늘어날 수 있다. 반면에 거대 플랫폼기업이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가 구축되어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일부 금융업에 진출한 가운데 상이한 규제 적용과 금융상품 중개 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내재화금융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화금융은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플랫폼 기업 또는 제품 판매회사와 제휴를 맺고 재화나 용역 구매 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구매후결제 저신용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가 있지만, 저신용자들에게 과도한 부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정보(서비스의 기능 및 위험 등)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거래 방지 방안 등 표준화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⁶⁶⁾

또한, 내재화금융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불확실성의 문제도 있

165) 위의 보도자료, 7면.

166) 같은 취지로 이수환(2022), 4면.

다.¹⁶⁷⁾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정보 제공, 권유, 중개 여부의 구분이 쉽지 않고, 각각의 서비스가 권유 내지 중개로 판단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금융상품의 판매 규제를 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한 면이 있다. 그리고, 내재화금융의 경우 비금융기업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 플랫폼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책임 소재 규명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모호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어(법 제45조) 중개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내재화금융의 본질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내재화금융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금융 규제 체계로는 이러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규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내재화금융을 통한 소비자 편의 및 금융포용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 및 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금융혁신과 함께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문에서 논의한 내재화금융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재화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이나 업무별로 제한적인 금융업 인허가 제도, 즉 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167) 이성복, “비대면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이슈보고서 21-32, 2021, 자본시장연구원, 11면.

있다. 둘째, 소액 선구매후결제업을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규정하여 다양한 핀테크기업이 선구매후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신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선구매후결제업의 위험 수준에 맞는 균형 있고 비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핀테크기업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중개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 독과점 등 불공정 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논문투고일: 2023. 9. 3., 심사개시일: 2023.9.6., 게재확정일: 2023.9.27.)



▶ 권태율 · 고동원

내재화금융, 임베디드금융, 선구매후결제, 후불결제,
핀테크, 내재화결제, 내재화보험, 내재화투자, 내재화은행업

【참 고 문 헌】

I. 국내 논문

- 구태영·이상원(2022),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융센터 Brief, 2022.
- 손재희(2022), "임베디드 보험 사업모델의 이해," KIRI 리포트 포커스, 2022.
- 신경희(2021),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성장과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21-15, 자본시장연구원, 2021.
- 아산나눔재단(2020),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정책 제안 발표회 자료," 2020. 11. 5.
- 안태준(2022),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신용 기반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BNPL)서비스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41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 윤민섭(202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09호, 2020. 11.
- 이성복(2021), "비대면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이슈보고서 21-32, 자본시장연구원, 2021.
- 이수환(2022),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시 고려사항 -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 " 이슈와 논점 제20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 이정수(2021),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 이정은(2021),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1), "MZ세대를 공략한 후불결제(BNPL) 서비스의 부상," 하나 Knowledge+, 2021.
- _____ (2022a), "서비스형 बैं킹(BaaS), 기업금융의 판도를 바꿀 기

회,” 하나CEO 경영이슈 제1호, 2022.

_____(2022b), “이커머스 기업, 왜 금융업에 뛰어드는가,” 하나 Knowledge+ 제24호, 2022.

_____(2022c), “카카오가 쏘아올린 플랫폼 규제 이슈,” 하나 Knowledge+ 제39호, 2022.

II. 외국 논문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2018),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11.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2022),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 2022.

Dresner, A. et al.(2022), “Embedded finance: Who will lead the next Payments Revolution?,” McKinsey & Company, 2022.

HM Treasury(2021),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2021), “The Woolard Review - 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Man, E.(2021), “Embedded Fintech: Which financial services should be embedded?,” 2021.

Markull, L.(2020), “Is Shopify a Fintech player now?,” 2020.

Harris, Matt, Blake Adams, Adam Davis and Jeff Tijssen(2022), "Embedded Finance: What It Takes to Prosper in the New Value Chain," Bain & Company, 2022.

Ohnishi, M.(2021), “New digital financial services offer the prospect of high customer retention—expectations for the growing trend of “Embedded Finance-,” Mitsui & Co. Glob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onthly Report, 2021.

Ozili, P. K.(2022), "Embedded finance: assessing the benefits, use

- case, challenges and interest over time", *Journal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ics*, Vol. 2 No. 2, 2022.
- Shevlin, R.(2020), "Uber's Departure From Financial Services: A Speed Bump On The Path To Embedded Finance," *Forbes*, 2022.
- Strange, Angela(2019), "Every Company Will Be a Fintech Company", a16z Summit presentation, 2019.
- NTT DATA(2022), "「エンベデッド・ファイナンス (埋め込み型金融)の実態把握調査」 最終報告書," NTT DATA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ING, 2022.
- PwC(2020), "2020年金融商品販法改正の概要," PwC Legal Japan News, 2020.
- 城田真琴(2021), 『エンベデッド・ファイナンスの衝撃』, 東洋経済新報社, 2021.
- 斎藤創・浅野真平(2021), "Embedded Finance(Modular Finance)の概要と日本法, 日本での可能性," 2021.
- 桜井健夫(2022), "キャッシュレス支払いの構造・法制度と消費者問題," 現代法学 第43巻, 2022,
- 平野真由(2022), "エンベデッド・ファイナンス (組込金融)の序論的考察," 富大経済論集 第67巻 第3号, 2022.

Abstract

Review of Regulatory Issues on Embedded Finance in Korea

Tae Yul Kwon

Dong Won Ko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embedded finance, which refers to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o non-financial platforms and applications. This phenomenon is fueled by the surge in demand for convenient, seamless, and tailored financial solutions that can be accessed at any time and from any location. By incorporating financial services, such as payments, lending, insurance, and wealth management, directly into their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companies are able to leverage embedded finance to provide their customers with an all-inclusive experience.

This article provides an examination of embedded finance, a concept that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recent times, along with relevant overseas cases.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o non-financial platforms and applications has the potential to streamline financial activities for users, allowing them access all services through a single online application. However, despite the potential benefits of embedded finance,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are inadequate to address the converg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companies. Therefore, regulatory measures that align with the current trend are essential. While embedded finance can enhance consumer convenience and financial inclusion, it also raises concerns regarding consumer protection and the monopolization of Big Tech companies. As suc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se concerns and

adopt preemptive measures to minimize side effects while promoting financial innovation for consumer benefits.

This article proposes regulatory measures for embedded finance as following: proportionally regulating buy-now-pay-later (BNPL) services, implementing a small license scheme, facilitating supports for financial product intermediaries, and institutionally enhancing to curb unfair competition.



▶ **Tae Yul Kwon · Dong Won Ko**

Embedded Finance, BNPL, FinTech, Platform, Embedded Lending, Embedded Banking, Embedded Payment, Embedded Investment